

배치기준 ‘별표2’ 관련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별표 2] <신설 2012.2.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u>제곱미터</u> 나. 작동기능점검: 12,000<u>제곱미터</u> 3.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다음 표의 가중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값(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제2호에	[별표 2] <일부개정 2013.4.16>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영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 "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10,000<u>m²</u> 나. 작동기능점검: 12,000<u>m²</u> 3.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u>m²</u>,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u>m²</u>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4.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 하되, <u>점검면적</u>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

따른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구분	대상용도	가중 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서는 아니 된다.

가. 실제점검 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구분	대상용도	가감 계수
1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u>수련시설</u>	1.2
2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 발전시설, <u>판매시설</u>	1.1
3류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1.0
4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5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0.8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 1) 영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3,500제곱미터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5. 점검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가. 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 2호의 면적에 0.1를 곱한 값

나. 영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

을 곱한 값

2) 영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5을 곱한 값

3) 영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나목에 따라 계산된 값(나목에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한다)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를 곱한 값

다. 영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2호의 면적에 0.15를 곱한 값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70세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이하 “점검세대수”라 한다)로 하되, 점검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5를 곱한 값

(다) 영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점검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간의 최단

6.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1일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대상물 상호 간의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제2호의 면적에서 0.0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점검한도 면적에서 뺀다.

7.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그 구체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종합정밀점검: 30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270세대)
- 2) 작동기능점검: 350세대(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320세대)

나. 1명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때마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인력 1단위가 1일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세대를 더한다.

주행거리 5km마다 1)에 따라 계산된 값(1)에 따라 계산된 값이 없을 때에는 실제 점검 세대수를 말한다)에 0.02를 곱한 값을 더한다.

6.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함께 점검할 때에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3.3,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제5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4.3을 곱한 값을 점검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3호에 적용한다.

7.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점검면적 또는 점검세대수로 본다.

1) 종합정밀점검: 70세대

2) 작동기능점검: 90세대

다.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함께 점검하는 때에는 점검하는 아파트 세대수에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33.3을,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34.3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기초로 점검한도 면적을 계산한다.

라. 제5호와 제6호는 아파트의 점검에도 적용한다.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